

CONTACT



변호사 김광열

T: 02.772.4412
E: kwangyul.kim@leeko.com



변호사 박정민

T: 02.772.4916
E: jungmin.pak@leeko.com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T: 02.772.4278
E: sanghyo.kim@leeko.com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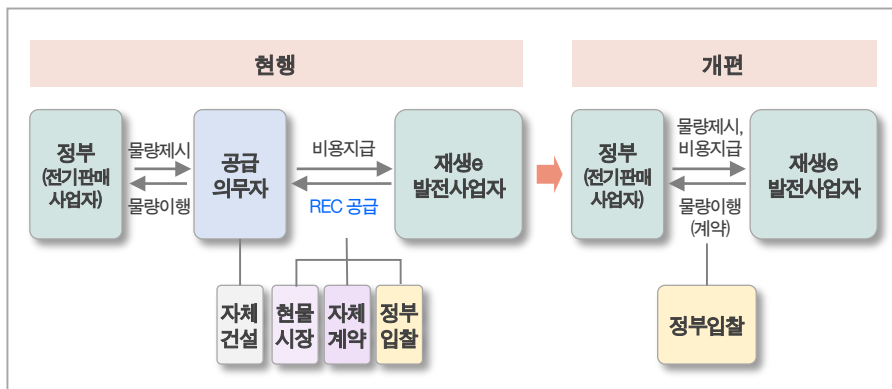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제도**)를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의 중간 결과를 2024. 6. 27.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PS제도 개편 방향 :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전환

정부주도 입찰제도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입찰물량을 공고한 후, 가격/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하여 낙찰된 사업자와 응찰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행 RPS 제도에 따라 정부가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발전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변경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즉 정부입찰)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의 개요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 정부주도 입찰제도의 주요 체제 및 기존 발전설비 처리 방안

연구 결과 중간 발표회에서 설명한 정부주도 입찰제도의 주요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단, RE100 등을 위한 민간 PPA는 제외)
계약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방향 CfD(Two-sided Contracts for Difference) 거래 방식 실제 행사가격은 낙찰가를 기본으로 제반 정책을 반영하여 조정
입찰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계획에 기반하여 발전원별 입찰물량 설정 (세부) 같은 발전원 내에서도 용량, 입지 등을 고려하여 입찰시장을 구분하여 물량 배정
사업자 선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지표와 비가격 지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낙찰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지표) 입찰가격(상한가 설정) ✓ (비가격지표) 산업/경제 기여도, 계통 영향, 주민수용성 등

한편, RPS 제도가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 RPS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발전설비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와 장기고정계약한 발전설비는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 설비는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현물시장 설비의 장기계약 전환을 위하여 현물시장 설비에 대한 별도 입찰을 일정기간 운영하되, LCOE,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가 설정
- 기타 자체건설 또는 자체계약된 설비는 REC 현물시장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현행 계약방식 유지

3. 시사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의 개편을 통해 현행 RPS 제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의 하나인 비가격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중심의 낙찰제로 인해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회에서도 밝혔듯이, RPS 체제가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금번 제도개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RPS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 전력수요기업과 장기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정부와의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량 강화 방향을 고려하여 국산기자재 활용 비율 제고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이외 바이오 등 정부 입찰 물량 규모가 적거나 입찰 시기가 부정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RE100 등을 위한 민간 수요기업과의 PPA 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